



# 수도권대기환경청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·촉매제(요소수) 판매금지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청에서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연료 첨가제·촉매제(요소수)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기준 적합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촉매제(요소수) 등 부적합 제품 현황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가 유통·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품 현황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홈페이지(정보/알림-연료/첨가제/촉매제)에서 확인 가능
4. 아울러,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(요소수)를 공급·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6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-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제90조제11호)

불임: 제조기준 부적합 촉매제(요소수) 목록 1부. 끝.

## 수도권대기환경청장

수신자 한국주유소협회, (사)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, 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



주무관	이예원	주무관	이옥례	과장	전결 2024. 9. 24. 김건식
-----	-----	-----	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	자동차관리과-843	(2024. 9. 24.)	접수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

우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34 1층 자동차관리과 / 0

전화번호 031-481-1404 팩스번호 031-481-1436 / lyw9690@me.go.kr / 대한민국 공개